

배포 일시	2022. 8. 29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 류제룡 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 박공열 (044-201-3479)
보도일시	2022년 8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- 주거용 주택 2년간 100% · 주택 외 상가, 상업 · 농업용 시설 50%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.
  -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(8개 시군구, 2개 읍면동)\*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.
    - \* (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) 서울 영등포구·관악구, 강남구 개포1동, 경기 성남시·광주시·양평군, 여주시 금사면·산북면, 강원 횡성군, 충남 부여군·청양군
-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과,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,
  - \*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, 토지분할측량, 지적현황측량, 등록 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
-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\*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\* 첨부자료2 참고

-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‘피해사실확인서’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%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,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, 상업·농업용 시설,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, 폭설, 태풍,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.
-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, 2019년 태풍(미탁) 피해지역, 2020년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,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.
- \*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'17년부터 총 73.8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
-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(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, <http://baro.lx.or.kr>), 및 전화(바로처리콜센터, 1588-7704)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

## 참고 1

##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

1.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8억 원)
  - 2017. 1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% 감면
2. '17년, '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0억 원)
  - 2019.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% 감면
3.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0.2억 원)
  - 2019. 5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% 감면
4. 태풍(미탁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0억 원)
  - 2019. 11월 태풍(미탁) 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% 감면
5.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31.1억 원)
  - 2020. 3월 ~ 2021.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% 감면
6.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7억 원)
  - 2020.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% 감면
7. '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0.7억 원, 진행 중)
  - 2022. 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, 창고, 공장, 농축산·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%

## 참고 2

## 지적측량 감면 방법

### □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의4] <개정 2010.8.25>

피해사실확인서					
발급번호: 제 호					
피해자		주소			
성명		생년월일			
피해 내용					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용도					
계출처					
위 사실이 소유(경작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20 년 월 일					
신청인: 성 명		(인)			
생년월일		주소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읍·면장 귀하 사실을 확인함.					
년 월 일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확인
*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.					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에 의해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
  -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
-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
-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간 감면 가능

### □ 지적측량 신청 창구

회사	구분	신청방법
한국국토정보공사(LX)	방문	· 지적측량접수창구(시군구청 민원실)
	인터넷	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( <a href="http://baro.lx.or.kr">http://baro.lx.or.kr</a> ) -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
	전화	·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-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,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
민간수행업체	전화 또는 방문	·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-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